

	<h2 style="margin: 0;">개인정보보호업무규정</h2>	규정번호	3-1-3
		제정일자	2012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의 행정부처와 각 학과, 부속기관, 부설기관 및 산하기관(이하 "당해기관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) ① 총장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 운영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
2.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지침의 수립·시행
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
4.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, 대응, 사후조치 총괄
5.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
6. 교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
7.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
8.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

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교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.

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처 직원 중 1인을 개인정보보호실무자로 임명한다.

⑤ 개인정보보호실무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.

제4조(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)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대학의 개인정보 수집, 보관, 처리, 이용, 제공,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.

1.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
2.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지침의 준수 및 이행
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
4.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

제5조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) ① 대학의 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, 업무계획의 수립과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무입학처장, 학술정보원장, 학생성공처장, 대외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전략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회의를 총괄한다.

④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 및 당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과는 별도로 임명하며, 개인정보보호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로 하며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위원장

의 제청에 의해 연장 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2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
3.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의견 조정
4. 개인정보파일의 보유·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
5.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받은 사항
6.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.

④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보호지침)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에서 수집·보유·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, 훼손, 오·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준 용)이 규정이 정하는 바 이외의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,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3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)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